

28 (第95回－水資源管理第1次)

| (議事棒 3打) | | |
|--|-------|-------|
| (17時 30分 散會) | | |
| ○出席委員 | | |
| 宋 德 華 | 尹 鍾 一 | 金 天 柱 |
| 金 平 洛 | 羅 太 均 | 朴 正 龜 |
| 李 善 宰 | 鄭 炳 權 | 金 亨 根 |
| 安 順 德 | 崔 鍾 德 | 劉 起 鍾 |
| 鄭 淵 甫 | | |
| ○専門委員 | | |
| 金 泰 鎭 | | |
| ○出席公務員 | | |
| 下水局長 | 崔 在 範 | |
| 書面答辯書 | | |
| [交通管理室] | | |
| ○鄭炳權委員 | | |
| (質疑要旨) | | |
| ○ '97년 1월 15일자로 개정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 기 위임한 20m 이상 도로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고 주차요금(위탁관리금)을 정수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도 '97년 1월 15일 이후에 적용하여 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법의 제규정이나 법률의 효력 불소급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적인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청에서 관리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 |
| (答 辯) | | |
| □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주체 | | |
| ○ 노상주차장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각각 설치 및 폐지할 수 있고,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주차장법(제7조·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구역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이어서 도로의 소유·설치주체와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주체는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 | |
| 도로법에서 도로를 특별시·도와 구(區) 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 | |
| 등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특별시·도와 구도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는 특별시·도만이 존재하고 우리 시의 경우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추진계획('88.3.31)에 의하여 넓이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로 재산이관하고,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노폭 20m 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
| ○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넓이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에게, 넓이 20m 미만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자치구청장에게 각각 설치 또는 폐지 및 관리권한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 | |
| □ 설치·관리권의 환수경위 | | |
| ○ 종전에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모두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99조에 의해 수입금 전액을 시 수입으로 하고, 시에서는 수익금의 30%를 구에 정수수수료로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 | |
|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자치구 재정열악 등의 이유로 수입금을 서로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에서는 주차요금을 시 조례에서 규정된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과 다르게 운영하여 통일성이 있는 시책추진에 문제점이 있었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관리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시설 확충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97.1.15.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권한위임사항을 환수하였으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와 구의 의견수렴시에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 | |
| □ 설치·관리권의 환수현황 | | |
| ○ 현재 20m 이상 도로상에 설치된 이관 대상 노상주차장은 총 16개 구 81개소 5,555구획이며 이 중 10개 구 52개소 3,547구획은 서울시로 관리이관 되었고, 6개 구 29개소 2,008구획이 아직 자치 | | |

| |
|--|
| <p>구에서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환수함에 있어 조례개정 이후의 시점부터 관리권을 환수하는 것이며, 자치구에서 민간에게 기 관리위탁한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한 것이므로, 법률의 소급 적용이나 법적인 안정성 확보 차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또한 노상주차장의 운영수입은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만 쓰도록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주택가 공용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재원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시 관리 노상주차장을 자치구에서 계속 관리토록 하여 주차요금수입을 자치구에 귀속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p>□ 자치구에 관리위탁 가능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치구에서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노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자치구에서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주차장의 지역여건, 주차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에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시와 자치구간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는 주차료 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대지, 유휴공지 등의 소규모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 등 우리 시의 자치구 지원시책에 있어 노상주차장의 이관을 불용하는 구는 제외하도록 하여 우리 시의 시책에 구가 적극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